

#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9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13일

발 의 자 : 서윤기, 김동식, 박기재, 정진철,  
김기대, 김제리, 봉양순, 임만균,  
정재용, 임종국, 양민규, 이정인,  
유정희, 박기열, 오현정, 전병주,  
이상훈, 김화숙, 황인구, 장상기,  
오중석, 최 선, 채인묵, 장인홍,  
이태성, 추승우, 이동현, 전석기,  
노식래, 노승재, 김경영, 김희걸,  
권순선, 문병훈, 김수규, 김광수,  
유 용, 송도호, 최영주, 문장길,  
최정순, 홍성룡, 김경우 의원(43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의 정의를 개정함(안 제2조제5호라목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라목 중 “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, 학생 및 직장인”를 “고용계약이 없는 사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행위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<u>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,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</u></p> <p>마. (생략)</p> <p>6. ~ 1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<u>고용계약이 없는 사람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